

행정처분 사전통지(공시송달)

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

2015년 3월 18일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

-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
2. 당사자

성명	주소
노철호	서울 서초구 동광로19길 119 1층 (방배본동)
최성숙	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56, 6동 502호 (옥수동,한남하이츠아파트)
Jinhuayyu	서울 광진구 자양동 608-38 1층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SBS는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이 제한됨
- '14년말 폐쇄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노철호, 최성숙, Jinhuayyu는 각각 SBS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시정명령

- 방송법상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한 규정(방송법 제14조제1항)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(이행기한은 6개월 이내에서 방통위가 결정)

5.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

- 방송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제2호

6. 의견 제출
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과천정부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
지상파방송정책과

※ 담당 : 이광용 (☎ 02-2110-1424, FAX : 02-2110-0136, kylee@kcc.go.kr)

- 제출기한 : 2015년 5월 18일까지